

대구지방법원 2018. 9. 11 선고 2018가단5420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4. 8 선고 2018나8505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8. 9. 11 선고 2018가단5420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18. 8. 21

판결선고 2018. 9. 11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431.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-1'부분 2.7㎡ 지상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스테이트지붕 건물을 철거하고,그 대지 2.7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431,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대구 중구 D 대 46.3㎡ 및 그 지상의 세멘부록조 스테이트지붕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기'부분 2.7㎡ 지상에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'거' 부분을 점유·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중 '-1' 부분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'기'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법정지상권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동의하에 신축한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2) 시효취득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을 1962. 1. 6. 신축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'기'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,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. 1. 6.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,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,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, 대가관계,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,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,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7984 판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'기'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은정

별지